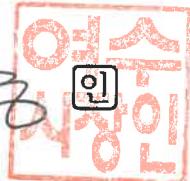
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다문화학생
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 2023.12.29



여수시 조례 제2025호

붙임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 다문화학생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 구성원” 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.
2. “다문화학생” 이란 「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.
3. “이중언어 교육” 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목표 및 기본방향
2.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
3.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
4.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
제5조(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

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
 2.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
 3. 이중언어의 연구 및 개발
 4. 그 밖에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·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